

프랑스의 동물보호법제 개혁

I. 입법의 배경

1. 동물보호의 연혁

(1) 형사법적 보호

19세기의 유럽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동물보호입법¹⁾은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의 동물보호는 형사법에서부터 출발하였다. 1850년 7월 2일에 가축에 대한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일명 그라몽법(Loi Grammont)²⁾이 제정되었다. 다만 보호법익이 동물 자체가 아니라 동물이 고통을 겪는 광경을 보았을 때 침해되는 인간의 감수성³⁾(sensibilité humaine)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인식과는 거리가 있었고 어디까지

나 가축(animal domestique)에 한정된 것이었다. 공연성(publicité)을 요하기 때문에 남모르게 이루어지는 학대에는 적용될 수 없었고 적극적인 학대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굶기거나 추위에 방치해서 죽게 하는 행위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⁴⁾

그라몽법상 동물학대죄 : 가축을 공연히 그리고 함부로 학대한 사람은 5~15 프랑의 벌금과 5일간의 구금에 처한다.

반려동물(animal de compagnie)로서의 의미와 인간에게 끼치는 정서적인 면을 주목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서 ‘동물법(droit de l’animal)’이란 개념이 등장하였

1) 이에 관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1권 제3호(2010), 28면 이하 참조.

2) 이 법을 제안한 Jacques-Philippe DELMAS de GRAMMONT을 따라 붙인 이름이다. 이 법은 형법전에 삽입되었다.

3) Suzanne ANTOINE, Le droit de l’animal, Recueil Dalloz 1996, p. 126.

4) Fanny DUPAS, Le statut juridique de l’animal en France et dans les É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 Historique, bases juridiques actuelles et conséquences pratiques, Thèse, Toulouse, 2005, p. 15.

5) 오승규,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연구」 제15집 제4호(2015), 1360면.

다.⁵⁾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인간의 생활상이 바뀌면서 동물 역시 농경사회에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⁶⁾ 동물의 복지(bien-être de l'animal)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처럼 동물 고유의 또는 동물과 인간에게 공통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와 원칙들을 동물법⁷⁾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출발한 동물법은 이제 동물에 대한 윤리 개념이 발달하면서 동물을 새로운 권리주체로 보는 관점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⁸⁾

이러한 변화는 형법에서 시작되었다. 1959년 9월 7일자 데크레(décret) 제59-1051호는 종전의 그라몽법을 폐지⁹⁾하면서 동물학대죄의 성립요건에서 공연성(publicité)을 삭제함으로써 보호법익을 인간이 아닌 '동물 고유의 이익(intérêt propre de l'animal)'으로 전환하였다.¹⁰⁾ 그리고 '함부로(abusivement)'를 '불필요하게(sans nécessité)'로 대체하였다. 또 기존의 가축에 더하여 '길들여진(apprivoisé)' 또는 '감금된(tenu en

captivité)' 동물도 보호대상에 추가하였다.

이어서 1963년 11월 19일자 법률 제63-1143호는 잔혹행위죄(délit d'acte de cruauté)를 신설하여 단순학대행위보다 더 심각한 행위를 처벌하는 길을 열었다.

구 형법 제453조 : 본조는 누구든지 불필요하게, 공연성 여부는 불문하고, 가축, 길들여진 또는 감금된 동물에 대한 잔혹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드디어 '자연보호에 관한 1976년 7월 10일자 법률' 제9조는 동물을 '감수성을 지닌 존재(être sensible)'로 규정하여 가축을 도살할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진정한 혁명(véritable révolution)'¹¹⁾을 가져왔다. 비록 주인에 의해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가축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보호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역시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농업법전 제276조에는

6) Fanny DUPAS, *op. cit.*, p. 17.

7) Suzanne ANTOINE, *op.cit.*

8) 오승규, 위의 글, 1361면.

9) 그라몽법을 폐지하면서 구형법 R. 38-12조를 대체하였다.

10) Suzanne ANTOINE, *op.cit.*

11) Fanny DUPAS, *op. cit.*, p. 22.

가축과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금지되었다.¹²⁾ 또한 이 법 제13조는 구형법 제453조를 일부개정하여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추가하였다.

1976년 7월 10일자 법률 제9조 : 감수성을 지닌 존재인 모든 동물은 소유주에 의해 그 종의 생물학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조건에 놓여져야 한다.

1994년부터 시행된 프랑스 신형법전에서는 동물학대죄의 편제를 종래 ‘재산에 대한 죄’로부터 분리하여, ‘사람(les personnes)’, ‘재산(les biens)’, ‘국가·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la nation, l’Etat et la paix publique)’와 병렬적으로 ‘그 외의 죄(Des autres crimes et délits)’라는 독자적 영역에 삽입하는 식으로 개편하였는데, 이로부터 프랑스 형법상의 동물의 지위가 물건으로부터 인간에 크게 근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입법자가 동물을 다른 유체 재산(biens de nature matérielle)과 구별하여 생명체(être vivant)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현재 프랑스형법은 동물

에 대한 학대(sérvices graves), 잔혹행위(actes de cruauté), 유기(abandon)를 처벌하고(형법 L. 제 521-1조), 기타 부당한 처우(mauvais traitement)를 처벌하고 있다(형법 R. 654-1조). 이러한 형사법적 장치는 보충적 기능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민사법적 장치가 동물보호의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¹⁴⁾ 여기에서 그 열쇠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동물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 형법상 동물에 대한 범죄를 규정하는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이다¹⁵⁾.

(2) 민사법적 보호

1) 종래의 민법 규정과 판례

1804년 제정된 프랑스민법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e)에 기초하여 오랫동안 동물을 물건으로서 사람이 소유하는 재산의 일종으로 보는 ‘동물-물건(animal-chose)’ 개념을 유지해왔다.¹⁶⁾ 농경사회에서 동물을 ‘농업경영의 요소(élément de

12) Fanny DUPAS, *op. cit.*, p. 26.

13) Suzanne ANTOINE, *op.cit.* ‘인간의 장기에 관한 범죄’와 ‘인간의 배아에 관한 범죄’가 동물학대죄와 함께 같은 분류에 들어가게 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14) 오승규, 앞의 글, 1363면.

15) Fanny DUPAS, *op. cit.*, p. 49.

16) Fanny DUPAS, *op. cit.*, p. 11.

l'exploitation agricole)로서 바라본 이른바 '동물-기계(animal-machine)' 개념¹⁷⁾에 따른,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법적 지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동물을 바라본 것이었다. 1999년 개정 이전의 민법 제524조와 제528조에서는 동물은 물건(objet)과 물체(corps)라고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성질에 의한 동산(meuble par nature)'이면서 경작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용도에 의한 부동산(immeuble par destination)'이었다. 1999년 법률에서 위 규정들에 대한 개정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제524조 제1항 :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이용 및 경영을 위하여 토지에 둔 동물 및 물건은 용도에 의한 부동산이다.

제528조 :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동물 및 물체는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거나 외부의 힘에 의하여 이동할 수 있는 것인가를 불문하고 모두 성질에 의한 부동산으로 본다.

이에 따라 '동물'이 '물건' 또는 '물체'의 하위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명확¹⁸⁾해지긴 했

지만 여전히 '동산'이고 '재물'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었다.

그런데 판례는 자기 소유 동물이 죽임을 당한 경우 그 동물의 주인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¹⁹⁾으로서 동물이 재산적 가치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었다. 기존 민법과는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해석이었다.

2) 학설

종래의 프랑스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기초 위에서 형법도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학대죄를 규정했기 때문에, 동물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객체에 그칠 뿐이었다. 그러한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 지위의 주체여서가 아니라 단지 인간의 윤리적 의무의 소산²⁰⁾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1976년 7월 10일자 법률의 시행 이후 동물의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동물을 '배아 상태의 권리주체(sujet de droit embryonnaire)'로 보아 법인격을

17) DESCARTES가 주장한 개념으로서 동물을 하나의 동력자원(source d'énergie)으로 보는 것이다. 기계동력이 개발되기 전에는 우마 등 동물의 이용이 농사에 제공되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자원이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18) Fanny DUPAS, *op. cit.*, p. 38.

19) Cass. 1^{re} civ., 16 janv. 1962 ; Caen, 30 oct. 1962 ; Cass. civ., 27 janv. 1982.

20) Suzanne ANTOINE, *op.cit.*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²¹⁾와 동물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intérêts juridiquement protégés)’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권리주체로서 법인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²²⁾가 대표적이다.

또한 신형법의 편제 개편에 주목하여 동물은 더 이상 재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보호 대상이고 법적 인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²³⁾도 대두되었다.

II. 입법의 경과

1. 민법 개정의 제안

2005년 5월 10일 파리항소법원의 명예원장이며 프랑스 ‘동물의 권리동맹(Ligue française des droits de l’animal)’의 회계감독관이기도 한 Suzanne ANTOINE가 법무부장관 Dominique PERBEN에게 제출한 ‘동물법제에 관한 보고서(Rapport sur le régime juridique de l’animal)

는 동물에 관한 새로운 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법개정과 더불어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²⁴⁾. 제1제안은 동물을 사람 및 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범주를 창설하는 것이다. 제2제안은 동물을 재산의 범주 안에 넣어 특수성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을 보면, 1970년대 이후 산업적 사육과 동물실험의 발달을 배경으로 해서, 동물을 인간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종차별(spécisme)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종차별이라 함은 어느 한 종(es-
pèce)에 우월성을, 다른 한 종에게는 열등성을 부여하여 차별하는 일종의 편견²⁵⁾으로 동물을 인간과 차별 취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학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연구²⁶⁾가 진행된 끝에 해결책으로 동물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ANTOINE 보고서는 2015년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21) COURET, Note sur la décision rendue par la Cour de cassation le 8 oct. 1980, *D.* 1981, *Jur.* p. 361.

22) DAIGUEPERSE, L’animal, le sujet de droit : réalité de demain, *Gaz. Pal.* 1981, I, *Doctr.* p. 160.

23) MARGUÉNAUD, L’animal dans le nouveau code pénal, *D.* 1995, p. 187.

24) Suzanne ANTOINE, Rapport sur le régime juridique de l’animal, 2005, p. 44.

25) J.-B. JEANGÈNE VILMER, *Éthique animale* : PUF, 2008, p. 46.

26) J.-P. ARGUÉNAUD, La personnification juridique des animaux : *D.* 1998, p. 205; L. BOISSEAU-SOWINSKI, *La désappropriation de l’animal* : PU Limoges, 2013.

그리고 2013년에는 기존 민법상 人(personnes)과 재산(biens) 사이에 동물에 대한 고유한 범주를 창설해달라는 내용으로 'Fondation 30 million d'amis'라는 동물보호단체의 대규모 청원²⁷⁾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13년 10월 7일에 동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목적으로 한 의원발의 법안(proposition de loi)이 제출되었고, 이를 흡수한 정부발의법률안(projet de loi)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2. 법안 제출과 의회 심의

(1) 법안 제출

프랑스 정부는 2013년 11월 27일 「사법(司法)과 내무(內務) 분야에서의 법과 절차의 현대화와 간결화에 관한 법률안(Projet de loi relatif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des procédures dans les domaines de la justice et des affaires intérieures)」을 제출하였다. 제안이유서(Exposé des motifs)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되어 있는 영향평가(Étude d'impact) 보고서에서는 동물의 지위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2) 의회의 심의와 공포

2014년 1월 23일 상원 1차 독회에서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양원을 오가면서 내용이 수정되어 총 5회의 독회를 거친 끝에 2015년 1월 28일 하원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동물의 지위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들어간 것은 2014년 4월 16일 채택된 하원독회 수정안에서였다. 이 수정안에서는 법률안 제1조의1을 신설하여 민법 제515-14조를 비롯한 동물 관련 민법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항은 2015년 1월 22일 상원 수정안에서는 삭제되었다가 2015년 1월 28일 하원의 최종의결에서 부활하여 법률안 제2조에 애초의 내용대로 담기게 되었다.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²⁸⁾에 따라 심사를 통과하여 2015년 2월 16일에 공포되었다.

III. 입법에 따른 동물의 지위 변화

2015년 2월 16일자 법률(제 2015-177호) 제2조는 프랑스 민법 제515-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27) Le Figaro, 24 oct. 2013, p. 9. 70만명 이상이 서명하였다.

28) Décision n° 2015-710 DC du 12 février 2015. 이 결정에서 동물의 지위 관련 부분은 쟁점이 되지도 않았다.

민법 제515-14조 : 동물은 감성을 지닌 생명체이다. 동물을 보호하는 법률의 한도 내에서 동물은 재산법 제도에 따른다.

이 법률에 의해 동물은 더 이상 성질에 의한 동산(meuble)이 아니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성(sensibilité)을 지닌 생명체(être vivant)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민법개정은 소극적인 방식으로나마 ‘사람’과 ‘재산’ 사이에 동물을 위한 중간 범주를 창설했다. 새로운 장을 편제하는 대신 재산편에 동물이 감성을 지닌 생명체임을 명기하면서 기존 동물 관련 조항들(민법 제522조, 524조와 528조)을 일부 개정하였다. 애초에 입법자의 의도는 동물의 법적 정의(définition juridique)를 내리면서 동물을 유체재산(biens corporels)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것²⁹⁾이었지만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다만 장래 고유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³⁰⁾, 현실적으로 인간 및 다른 재산과 구별되는 동물만의 특징을 찾아 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감성을 지닌 생명체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단순한 물건을 떠나 인

간에 근접하는 중간적 지위를 부여하는 중간적 상태에 두는 정도로도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³¹⁾ 민법 제515-14조의 적용 범위는 재산의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동물에 한정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다.³²⁾

IV. 평가와 시사점

프랑스에서는 먼저 형사법 분야에서 동물 보호가 시작되어 차근차근히 발전한 끝에 민법상의 지위변화에 이르렀다. 1976년의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동물을 감수성 있는 존재(être sensible)로 규정한 이래 그 흐름을 따라왔다.

동물보호에서 획기적인 진전임에는 틀림없으나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농업과 목축 그리고 관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거위 살찌우기 (gavage), 사냥개를 이용한 수렵(chasse à courre), 투우(tauro-machie), 의약품연구(recherche pharmaceutique) 그리고 집약사육(elevage intensif)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저렴한 가격과 수익성을 맞추면서 감수성까지 충족해야 하는 그야말로 첩첩산

29) C. UNTERMAINER, JOAN CR, 3e séance, 15 avr. 2014, p. 2602.

30) P. REIGNÉ, Les animaux et le Code civil, JCP G 2015, n° 9, p. 242.

31) 오승규, 앞의 글, 1372면.

32) J. GLAVANY, JOAN CR, 3e séance, 15 avr. 2014, p. 2605.

중이다.³³⁾ 무엇보다도 이번 입법이 최종적이 아니라 장래를 향한 진전이고 교두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란 점에서 법적 안정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동물학대죄가 있지만 동물에 대한 지위 부여를 선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의식의 변화를 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은 최근의 한 뉴스 기

사³⁴⁾가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다르긴 하면서도 생명과 감성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상시 과제이고 이제 우리도 프랑스법을 참조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 부여라는 본질 문제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오 승 규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 뉴스1, “동물 굶기고 때려 죽여도... ” 처벌 안 받습니다.” - [동물학대, 그 지독한 고리를 끊자] ③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2016년 10월 25일, <http://news1.kr/articles/?2811570>.
- 오승규,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연구」 제15집 제4호(2015).
- ANTOINE, Suzanne, Rapport sur le régime juridique de l’animal, 2005.
- _____, Le droit de l’animal, Recueil Dalloz 1996.
- ARGUÉNAUD, J.-P., La personnification juridique des animaux : D. 1998.
- BOISSEAU-SOWINSKI, L., La désappropriation de l’animal : PU Limoges, 2013.
- COURET, Note sur la décision rendue par la Cour de cassation le 8 oct. 1980, D. 1981, Jur.
- DAIGUEPERSE, L’animal, le sujet de droit : réalité de demain, Gaz. Pal. 1981, I, Doctr.
- DUPAS, Fanny, Le statut juridique de l’animal en France et dans les É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 Historique, bases juridiques actuelles et conséquences pratiques, Thèse, Toulouse, 2005.
- GLAVANY, J., JOAN CR, 3e séance, 15 avr. 2014.
- JEANGÈNE VILMER, J.-B., Éthique animale : PUF, 2008.
- MARGUÉNAUD, L’animal dans le nouveau code pénal, D. 1995.
- REBOUL-MAUPIN, N., Nos amis, les animaux... sont désormais doués de sensibilité : un tournant et des tourments !, D. 2015.
- REIGNÉ, P., Les animaux et le Code civil, JCP G 2015, n° 9.
- UNTERMAINER, C., JOAN CR, 3e séance, 15 avr. 2014.

33) N. REBOUL-MAUPIN, Nos amis, les animaux... sont désormais doués de sensibilité : un tournant et des tourments !, D. 2015, p. 573.

34) 뉴스1, “동물 굶기고 때려 죽여도... ” 처벌 안 받습니다.” - [동물학대, 그 지독한 고리를 끊자] ③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2016년 10월 25일, <http://news1.kr/articles/?2811570>.